

평창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 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 부 경 위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 6 . 23 평창군수(환경복지과장)
- 나. 회 부 일 자 : 1999. 7 . 27.
- 다. 상 정 일 자 : 1999. 7. 28.제69회 평창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

2. 제 안 이 유

- '95.8.4 폐기물관리법이 개정과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군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3. 주 요 내 용

- 가. '95.8.4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본 조례중 일반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변경.(안제2조, 제3조, 제5조)
- 나. 1일 300kg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다량 배출사업장과 300kg 이하 배출하는 소량 배출사업장 폐기물로 구분됨으로 소량 배출사업장 폐기물로 표기하여 구분(안 제4조, 제6조)
- 다. 종량제 판매소의 지정취소 조항 신설(안 제10조 제3항)
- 라.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취소 조항 삭제(안제11조)

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있어 독립채산제 조항 삭제(안 제14조)

4. 검토 결과

○ '95.8.4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변경되고, 300Kg를 기준으로 다량 배출사업장 폐기물과 소량 배출사업장 폐기물로 구분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관련법이 이미 오래전에 개정하였음에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자치법규 존립에 문제점이 있으며

○ 조례상 판매소 지정취소를 독립조항으로 설치하는 것은 행정규정 완화대상이고,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독립채산제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문제점이 없으며 판매자 관리에 관하여는 제10조(판매자 준수사항)에 신설하여 운영함에 따라 판매자 관리에는 큰지장이 없을 것임.